

# 2018. 12. 11. 보도 자료

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제 목 : 12월 공개변론 안내

□ 헌법재판소는 오는 **12. 14.(금) 14:00**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대리인)	이해관계인 (대리인)	비고
1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학교법인 ○○○○학원 외 8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2)	교육부장관 (법무법인 (유한) 지평)	

붙임 : 관련사건 보도자료 1부. 끝

# 보 도 자 료

## 자사고 동시모집 및 중복지원금지 사건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공 개 변 론 ]

헌법재판소는 2018년 12월 14일(금) 14:00 대심판정에서, 2018. 2. 28. 접수된 2018헌마2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선발하고,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에게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제81조 제5항이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 사학운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교육제도 법정주의 및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이해관계기관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뒤 위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자사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중학생 및 그 학부모들이다.
- 기존에는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함으로써, 학생들이 전기에 자사고를 지원하고 후기에 일반고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런데 2017. 12. 29.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기학교에서 자사고를 삭제하고(시행령 제80조 제1항), 평준화 지역의 후기학교 중복지원과 관련하여 자사고를 제외한다는 취지를 삽입하였다(시행령 제81조 제5항).
- 이에 청구인들은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사고 지원이 어려워지고 자사고는 학생선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개정 시행령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법인의 사학 운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2018.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심판대상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 28516호로 개정된 것) 제80조 제1항과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 ①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고등학교 또는 학과를 말하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라 한다)는 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모든 고등학교 또는 학과로 한다.**

**1. 삭제**

**2.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예술·체육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다만, 제90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제외한다.

4.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5.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삭제, 2017.12.29.>

6.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예술인 및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또는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로 한정한다)

제81조(입학전형의 지원)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 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제90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주간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 □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자사고 불합격시 일반고 배정에 불이익을 주어 자사고를 지원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고, 청구인 학교법인들의 사학운영의 자유(학생선발권)를 침해한다. 또한 과학고, 영재학교 등은 전기학교로 유지하면서 자사고는 후기학교로 변경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 학교법인들과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자사고 입학전형은 추첨 또는 면접, 내신 및 면접에 의하므로 입시경쟁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고, 과학고, 영재고에 비해 고교서열화의 주된 원인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설립목적과 다른 파행적 운영 여부는 개별 학교마다 다르고,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해당 학교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개정이유로 내세우는 고교입시경쟁 과열 및 고교서열화의 문제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 청구인 학교법인들은 자사고 설립조건으로 제시된 ‘전기모집 원칙’ 내지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사고 지원 보장 방침’을 믿고 15년간 자사고 운영에 막대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는바,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신뢰를 합리적 근거 없이 훼손하여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학교법인의 사학운영의 자유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제한이 가능한데, 자사고의 존속여부나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대강의 내용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에서 임의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반한다.

## □ 이해관계인 교육부장관의 의견요지

- 자사고 불합격시 일반고 배정상의 불이익은 전형적인 사실상의 불이익이고, 기존에 누리오던 특혜가 제거된 것에 불과하여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다. 또한 이는 심판대상조항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각 시도 교육감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자사고는 그동안 학생 우선선발권이라는 특례를 누리면서도 설립취지에 반하여 입시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그로인해 고교서열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고교 입시경쟁 완화’, ‘동등하고 공정한 입학전형 운영’, ‘우수학생 선점 및 고교서열화 완화’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선발하도록 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사학운영의 자유, 학교선택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해방 이후 우리나라 고등학교 입학전형 제도는 계속 변화해 왔고, 교육환경도 급변하는 가운데 국가가 학생선발 시기조차 바꾸지 않고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는 크지 않다. 또한 학생 우선선발권은 국가가 제공하였던 혜택에 불과하므로 헌법적으로 보호할만한 신뢰라고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특정형태의 고등학교 학생 선발시기를 전기 또는 후기로 하느냐는 교육제도 수립의 본질적 내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두고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반한다거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 주요 쟁점

-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학교선택권, 사학운영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

-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 교육제도 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

## □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

- 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외 8[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외 2]
- 이해관계인 : 교육부장관
- 참고인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명예교수 윤정일(청구인 측)  
서울 미림여자고등학교장 주석훈(이해관계인 측)

## □참고인 의견요지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명예교수 윤정일(청구인 측)의 의견요지  
자사고는 고교평준화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시범학교 운영, 공청회, 각종 연구 실시 등을 통해 추진되었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그 성격이 다르고, 자사고에 우수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은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이며 자사고의 입학전형은 볼 때 고교 입시경쟁을 유발시킨다고 볼 수 없다.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권과 함께 지정취소권까지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자사고가 있다는 이유로 모든 자사고를 심각하게 규제하고 있다.
- 서울 미림여자고등학교장 주석훈(이해관계인 측)의 의견요지  
자사고 도입과정에서 사립학교의 호응을 위하여 무리하게 학생우선선발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자사고는 폭넓은 자율권을 누리면서 그 전제조건인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법인전입금 납입’ 등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반면 자사고로 인하여 일반고의 학력 저하 및 고교서열화를 야기하고 입시중심 교육에 치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으므로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는 것이 타당하다.